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3. 22(수) 10:00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18호
- 나. 제 출 자 : 이인식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3. 10.
- 라. 회부일자 : 2023. 3. 10.

2. 제안이유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국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인식개선 및 홍보(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3. 11. ~ 2023. 3. 17.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안 제2조(정의)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대상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

2)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3)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명시함.

4) 안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제4호)은 유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1)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항제3호2)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어야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 향후 지정 단체나 기관에 예산지원을 통해 삭제 지원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임.

5) 안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

다. 검토의견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영상물을 유포, 공유, 소지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유포협박’ 1939건(18.7%) 순으로 높았다.

연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을 보면 2021년 6952명으로 2019년(2087명)에 비해 4865명이 늘어났다. 여성이 5109명(73.5%)이고 남성이 1843명(26.5%)이었다. 2019년까지는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부터는 ‘1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출처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19	여성	1,832 (100.0%)	288 (15.7%)	463 (25.3%)	148 (8.1%)	33 (1.8%)	22 (1.2%)	878 (47.9%)
	남성	255 (100.0%)	33 (12.9%)	41 (16.1%)	19 (7.5%)	17 (6.7%)	10 (3.9%)	135 (52.9%)
	계	2,087 (100.0%)	321 (15.4%)	504 (24.1%)	167 (8.0%)	50 (2.4%)	32 (1.5%)	1,013 (48.5%)
2020	여성	4,047 (100.0%)	1,007 (24.9%)	863 (21.3%)	267 (6.6%)	77 (1.9%)	36 (0.9%)	1,797 (44.4%)
	남성	926 (100.0%)	197 (21.3%)	189 (20.4%)	65 (7.0%)	57 (6.2%)	51 (5.5%)	367 (39.6%)
	계	4,973 (100.0%)	1,204 (24.2%)	1,052 (21.2%)	332 (6.7%)	134 (2.7%)	87 (1.7%)	2,164 (43.5%)

※ 2020년 피해자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926명(18.6%)으로 전년 대비 비율이 다소 증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 분류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사이버괴롭힘	기타
2019	4,114 (100.0%)	1,213 (29.5%)	1,043 (25.4%)	354 (8.6%)	557 (13.5%)	144 (3.5%)	273 (6.6%)	530 (12.95)
2020	6,983 (100.0%)	1,586 (22.7%)	2,239 (32.1%)	967 (13.8%)	1,050 (15.0%)	349 (5.0%)	306 (4.4%)	486 (7.0%)

※ 2020년 피해자 4,973명은 총 6,983건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4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호소

- 유포: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 유포협박: 실제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 유포불안: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경우
- 사진합성: 사진 등이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 사이버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 기타: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 현황(2023. 3월 기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강동, 구로,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양천) 제정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